

#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

소관부서 : 여성보육과

제정 2017· 6· 30 조례 제1322호  
일부개정 2019· 8· 12 조례 제1521호  
일부개정 2023· 12· 22 조례 제2040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**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 
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5조(지원대상자 등)**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1.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
2.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
3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
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**제6조(지원사업)**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

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9·8·12, 2023·12·22>

1.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·정서지원 및 홍보
2.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
3. 주거 및 환경개선
4. 보건·의료서비스 지원
5. 한부모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자금 대여
6.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
7. 한부모가족의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
8.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
9.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, 소송대리 등 법률 구조서비스
10.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7조(일자리사업 우선 고용)**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가 시행하는 일자리사업에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3·12·22]

**제8조(협력체계 구축)**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,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3·12·22]

**제9조(지원의 중지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.

1. 다른 시·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
2.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3.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

[중전 제7조에서 이동 2023·12·22]

**제10조(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)**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는 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.

[중전 제8조에서 이동 2023·12·22]

**제11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·12·22]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·8·12 조례 제152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·12·22 조례 제204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